

제 74 회 국 회 회 의 록 제 7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0년 7월 16일(목)

의사일정 (제 7 차 본회의) 197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개의

1. 보고사항
2.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
3.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4.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6.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7. 군속인사법중 개정법률안
8.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
9. 공군기지법안
10. 사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11. 양곡관리법중 개정법률안
12.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13.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
14. 혈액관리법안
15. 창고업법안
16.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17.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18.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19.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율결정에 관한 동의안
20.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비준에 대한 동의안
2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22.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23. 양곡관리기금법안
24. 입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25. 검역법중 개정법률안
2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27. 대한준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
28.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
29. 1970년도 비료인수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0. 의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
31. 재정차관(철도사업)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32.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33.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34.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35.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
36. 세관관서설치법중 개정법률안
37.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 개정법률안
38.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
39. 영화법중 개정법률안
40.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41.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42. 한국과학원법안
43.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44. 고속국도법안
45.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1.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 3년
2.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4년
3.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5년
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년
5. 군속인사법중 개정법률안..... 6년
6.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 6년
7. 공군기지법안..... 7년
8.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8년
9. 양곡관리법중 개정법률안..... 8년
10.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9년
11.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보상법안..... 10년
12. 철책관리법안..... 10년
13. 창고업법안..... 10년
14.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11년
15. 대서양참치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12년
16.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13년
17.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14년
18.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간의 협약비준에 대한 동의안..... 15년
19.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15년
20.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16년
21. 양곡관리기금법안..... 17년
22.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17년
23. 검역법중개정법률안..... 18년
2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20년
25.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계속)..... 21년
26.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 26년
27.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 27년
28. 1970년도 비로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7년
29. 외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 28년
30. 재정차관(철도사업) 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28년

31.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28년
32.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29년
33.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35년
34.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	38년
35. 세관관서설치법중 개정법률안.....	42년
36.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 개정법률안.....	42년
37.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	43년
38. 영화법중 개정법률안.....	43년
39.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45년
40.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46년
41. 한국과학원법안.....	47년
42.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48년
43. 고속국도법안.....	48년
44.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49년

(12시 55분 개의)

○의장 李孝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가 오랫동안 걸려서 이렇게 개의시간이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 다음에 제 2항 3항까지 계속해서 처리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아마 한사가 넘을 것입니다.

그 2항 3항까지 처리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河在鳩 보고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1.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

(13시)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 2항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車智澈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외무위원장 車智澈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 2항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4일자 총무회담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외무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거쳐서 외무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이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은 또 저의 감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강하게 표현을 하라 또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라 또는 선동적으로 표현하라 하는 등의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단 한명의 미군이 한반도내에서 철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부라운」각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다짐한 사실이 빈곤자空約으로 둔갑했다는 사실과 또 아직도 60만 국군이 30년전에 만들어진 노후된 MI 소총에 우리 국군들이 생명을 걸고 있다.

우리 3,500만의 생존권을 의탁하고 있다. 하는 등의 내용의 골자로 결의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이 아시다시피 외교적인 문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극한적이고 선동적이고 또는 감상적인 이러한 용어는 이 내용에다가 답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교문서로서 손색이

없을 그러한 정도내에서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결의문은 주문과 결의내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결의문” 주문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긴밀한 유대 협력관계에 입각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공동방위의 책임지고 있음에 유념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과 업과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국국제연합군의 임무가 상존하고 있고 70년대 무력 적화통일을 목표로 전력강화에 광분해은 북괴의 각종 도발행위의 격화와 더불어 남침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 정세에 비추어서 현 단계로서는 현실 상황에 역행하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논의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통감하여 성급히 한국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 정부의 무모한 대한정책의 급선회가 한반도에서 돌이킬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침공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유발하게 될 여하한 명분의 주한미군의 감축도 이를 반대한다.

둘째 미국은 감군계획을 거론하기에 앞서 강화된 북괴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1966년 국군 전투병력 월남 중파를 계기로 공약을 거듭해 온 국군장비의 쇄신 강화작업과 군수산업육성의 지원을 선행 구체화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또한 감군추진에 선행하여 한국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되고 극동지구의 긴장상태가 해소될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한미 공동방위의 공약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강구 구현시켜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극한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피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국회의장 이름으로 이 결의안을 미국 대통령, 상 하 양원의장 또 한가지 불여서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 이 네분한테 직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13시 11분)

○의장 李孝祥 다음은 주한 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장 閔丙權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국방위원장 閔丙權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5일에 金振晚 鄭海永의원의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7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서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첫째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미국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군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감축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사전대책의 보장없는 주한미군 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사실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감축계획의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보다 철저한 협조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 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일소케 하고 부정 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세제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발생을 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협의의 통고를 가져온데 대하여서 정부는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계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서 민심의 책신과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해서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합니다. 3시 정각이을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 개회)

○의장 李孝祥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법관의보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검사의보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5시 20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4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5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이 두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들은후에 나중에 처리는 각각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이신 高在秘의원 심사보고를 해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高在秘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여러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위시해서 전반적인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20% 봉급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그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법률을 고쳐야만 7월 1일부터 다른 공무원과 같이 20% 처우를 개선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 법률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5월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서 심의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전 위원이 이의없이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법관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참 조)

1. 법관의보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2. 검사의보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부 록 기재)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항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부동산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안

(15시 23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번 더 高在秘 간사위원 심사보고 해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대리 高在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새로 제정될 법률로서 金鳳煥 의원의 12인이 제출한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 내용은 과거에 다시 말하자면은 일정부부터 제1차 화폐개혁 이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대부를 받은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에 그것이 그런것으로서

아직껏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일정시대에 돈 10,000원을 빌려 쓰고 담보설정을 한 그 등기가 지금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1,000대 1로 화폐가 개혁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등의 채권 내지 채무적인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등기부상에 번잡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내지는 가치가 없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말소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공부를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 법률의 골자올시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70년 5월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및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가결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법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金鳳煥의원 외 12인)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군속인사법중개정법률안

(15시 27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7항 군속인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金益俊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국방위원장대리 金益俊 군속인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2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

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5월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안한 것인데 국방위원회는 정부원안중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임명 또는 응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으나 이는 병역법 제94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속인사법에 새삼 2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47조 2항에 「임시군속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전형한다」라고 하였으나 체계상 전형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두가지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조무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군속인사법중개정법률안 (정부)
2. 군속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15시 31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도 간사 金益俊의원 심사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金益俊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1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하고 5월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국방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향토예비군이 동원명령을 받고 동원되거나 훈련을 할때 이를 공의 직무로 하여 직장을 보장하여 주고 향토예비군 대상자가 대원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원이나 훈련까지 불응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신고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상시 무장공비의 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의 동원이 근래에 와서 빈번함에 비추어 이때까지 징역만으로 다스려오던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동원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제안한 것이나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중 징역 또는 벌금과 구류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체형을 과하는 벌조에 구류를 과함은 이른상 부당하므로 구류의 벌칙만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6항에 신고이행자에 대한 벌칙은 병역법 제107조의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3조 동법 시행령 22조 규정 등으로 편승 기피는 막을수 있으며 과중한 벌칙으로 속박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0조 제2항의 신설에 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한 훈련 및 동원은 예비군의 임무성질상 당연히 공적 직무로 해석되므로 이와같은 의제규정을 두지않아도 근로기준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직장보장에 있어서 고용주가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피고용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결여되어 직장보장이 실

효를 볼수 없기 때문에 제15조 제7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옵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2.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공군기지법안

(15시 35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9항 공군기지법안을 상정합니다. 金益俊의원 다시 한번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金益俊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67년 7월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제6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7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후 제7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제안 원안에 의하면 비행안전구역의 기준과 그 높이의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므로 이를 비행안전상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비행장에 불과 기지위험시설물 등 설치의 금지 내지 제한에 있어서 원안은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위구역내의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구별없이 포괄적으

로 이를 규제하고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제거등 강제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의의 손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체 제거 변경 또는 중지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이를 삭제하여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1. 공군기지법안 (정부)
- 2.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15시 37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0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이신 **李聖秀**의원 심사보고 해주세요.

○문교공보위원장대리 **李聖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8년 1월 4일자로 된 동법 개정안은 국사의 제88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9회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의 심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설강습소의 정의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사설강습소로 정의케 하고 둘째로 제 8조의 인가청을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으로 하고 셋째 제10조의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넷째로 종전 인가를 받은 사설강습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다시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의 불복합성을 덜기 위해서 개정안의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을 현행 법대로 인가청으로 두기로 하고 다시 인가를 받게 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법의 개정 및 수정은 근간 난립하는 사설강습소의 사회적 교육적 폐단을 방지하며 법조문의 미비한 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한 것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1.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
- 2.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문교공보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역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15시 42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1항 양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文太俊**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림위원장대리 **文太俊** 양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970년 4월 9일자로 제안한 양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제73회국회 제 3차 5차 6차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

양곡관리법의 개정목적은 양곡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매점 매석과 폭리를 방지하여 가공시설과 가공과정에서 오는 감모율의 방지를 도모하며 또한 음식판매업자를 위시한 국민의 혼분식 실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고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법중 일부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 규제조치가 생산업자에게 지 영향을 미쳐서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 1항을 수정하여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를 삽입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제1항중 농림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감독 및 규제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2.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림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7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15시 45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 **申東旭**위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장대리 **申東旭**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吳元善**위원의 4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현행법이 임의가입제인 것을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서 강제가입토록 하며 자영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강제 적용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 기한을 정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토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째로는 의료보험조합의 상호 친선과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 중앙연합회 이것은 군인에 대한 의료보험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의료보험창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보험료의 강제징수규정 신설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체로 원안대로 채택하고 몇가지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징수법에 의한 강제 징수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해서 보험료의 강제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자귀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吳元善위원의 40인)
2.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도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

(15시 4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3항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申東旭**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대리 **申東旭**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법안은 1968년 9월 5일 **李于憲**의원의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 중대한 장애를 입은 자를 국가가 구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8년 11월 6일 제67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9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1969년 4월 17일 제69회 국회 제 6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1.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
(**李于憲**의원의 25인)
- 2.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상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혈액관리법안

(15시 49분)

○의장 **李孝祥**의사일정 제14항 혈액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申東旭의원 다시 한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장대리 **申東旭** 혈액관리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법안은 1968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한 것으로서 채 수혈자의 보호 및 혈액체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성질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본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습니다.

1969년 4월 25일 제69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동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귀수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혈액관리법안

(정 부)

- 2. 혈액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 역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창고업법안

(15시 52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5항 창고업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 위원장 **李相禱**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장 李相禧 본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고업은 허가제로 하고 둘째 창고 인치 약관 및 요금을 허가제로 하였으며 셋째 창고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넷째 인치 물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창고업의 양도 병합 및 상속을 허가제로 하였고 여섯째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이유를 법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창고협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여덟째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습니다.

첫째 제1조에서 법의 목적에 창고업의 적극 지도육성을 위하여 육성발전을 삽입하였고 둘째 제4조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이유는 창고업의 경영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과 허가처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세째 제6조에 인치거부사유에 창고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치물을 보관하는데 부적당한 때는 신설하였고 넷째 제10조에서 인가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시킨것은 인치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창고업의 자유경쟁을 제한 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 하였고 제2항에 부당경쟁 금지를 삽입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7조의 단서에서 화재보험가입에 있어서 인치인의 반대의사를 삭제한 것은 창고증권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강제 부보제로 한 것입니다.

여섯째 제24조에서 창고협회설립을 임의규정으로 한것은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에 협회를 통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제26조에 창고업의 육성을 신설한 것은 창고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덟번째 벌칙중에 제27조와 제28조를 통합하고 벌금과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고 제29조에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

였습니다.

아홉째 적용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이유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와 농업창고법에 의한 농업창고에 대하여는 본법의 적용을 해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번째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월로 한 것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없이 직접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었고 둘째 경과조치에서 기존업자에 대한 구제규정을 둔것은 법률과 사실의 괴리를 방지 하자는 것이며 세째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창고업법안

(정 부)

- 2. 창고업법안에대한수정안

(교제위원장)

(부특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15시 56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金宇榮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金宇榮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현 400원을 1,500원으로 1인 숙박료 현 30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규칙은 1964년 5월 11일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그간 물가지수와 인건비 및 숙박료등이 상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두한 증인들이 체류시 국회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부족으로 불편을 자아내게 하는등 사례가 허다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제안코자하오니 심의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1. 국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국회운영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15시 5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7항 대서양참치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車智澈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외무위원장 車智澈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의 요지는 대서양참치자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를 두고 협약구역내에서의 참치자원에 관한 연구 및 출판과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도의 지속적 어획을 권고케 하며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두어 본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기 위원회에서 위탁된 사항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협약가입에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서양구역의 원양어업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조업조건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서양 참치 보존관계 어업구성을 통하여 참치어업에 관한 최선의 정

보와 참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협약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동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에 대해서는 신민당의 차근출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차근출의원-「외무부장관 안나 오셨습니까?」)

지금 연락중에 있습니다.

(의석에서 차근출의원-「그러면 외무부장관 나오면 합시다.」)

본건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6. 1970년산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1970년산하곡양비교환율결정에 관한 동의안 (16시 7분)

○의장 李孝祥 그다음 의사일정 제18항 1970년산 하곡매입 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文太俊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림위원장대리 文太俊 1970년도산 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된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 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의 이유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 보리쌀 2등급기준 76.5「킬로」가마당 3,85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에 비해서 보리쌀 쌀보리쌀 모두 15「퍼센트」를 인상한 가격으로서 농림부가 산출한 「페리트」가격 또는 전국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추세등에 비할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던바 이 가격은 과거에 하곡정부매입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므로 정부 제안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동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여러의원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李孝祥 본건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趙始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70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하곡의 최성출회기인 7~8월에는 일시에 많은 보리가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되어 보리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수확기의 곡가가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은 물론 증산의욕이 감퇴되어 식량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고취를 위해 올해의 보리최성출회기 시장과임출회량을 적정가격으로 수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는 일반 매입으로 22만8천t(165만5천석) 양비교환 2만8천t(20만석) 농지세 1천t(7천석)합계 25만7천t(1,86만2천석)을 수매할 계획이며 일반매입중 5만t(36만2천석)은 신품종 밀을 수매코자 합니다.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패리티」가격, 미·맥가격의 격차와 그 밖에 물가추세등을 감안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생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리나 쌀보리 모두 작년산 하곡 매입가격보다 15%를 인상한 보리쌀 2등급 기준 76.5kg 가마당 3,850원(조곡 50kg 가마당 1,686원), 쌀보리쌀 2등급기준 76.5kg 가마당 3,251원(조곡 60kg 가마당 1,955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쌀 소비절약을 위한 대체식품인 밀가루용 원소맥의 자급도향상을 위해서 일반매입으로 수납되는 신품종 밀에 대하여는 kg당 350원의 생산장려금을 가산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하시어 정부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동의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에 대해서는 다소 이의가 있고 또 수정안이 곧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19항을 동시에 상정해가지고 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접수해서 토의를 하고 나중에는 각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제19항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을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文太俊의원 또 한번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장대리 文太俊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을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결정에 대한 동의요청을 제74회국회 제2차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의 책정내용을 보면 1969년도와 동일한 현행비료공급가격과 1969년도보다 15% 인상을 한 하곡매입가격과의 교환율이므로 농민들은 보리 50kg들이 2등급 한가마에 대해서 맥기비용 복합비료 25kg들이 2,422포대와 교환하게 되며 1969년도에 2,106포대보다 비료 0.316포대를 더 받는 결과가 되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유익한 안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사항없습니다.

여러의원들의 찬동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李孝祥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

했습니다.

○농림부장관 趙始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산 하곡 양비 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되는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에 적용할 교환율은 작년과 동일한 비료공급가격과 15% 인상하기로 국회에 동의 요청중인 하곡매입 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다음표와 같이 산출 하였습니다.

1970년산 하곡매입가격 2등급 기준은 76.5kg 정곡가마당 3,850원입니다.

비료교환량은 맥기비용 복합비료로서 정곡가마당 5,532포대가 되겠습니다.

쌀보리에 있어서는 역시 76.5kg 가마당 2,251원에 대해서 정곡 가마당 맥기비 복합비료는 4,671포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하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은 작년도 보다 15% 인상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료공급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하곡일반매입과 함께 최성출회기에 있어서의 파잉출회량을 흡수하여 맥가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정부가 목적하는바 농가소득의 증대와 증산의욕의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한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조속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1970년산하곡양비교환율결정에관한 동의안 (정 부) (부록에 기재)

17.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비준동의안(계속)

(16시 13분)

○의장 李孝祥 지금 형편이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은 잠깐 보류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아까 보류했던 제17항은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朴己出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己出의원 17항 참치자원의 보존하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의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국회의 체면 그리고 국민앞에 우리들의 체면을 보아서 하나 의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와 접쳐서 국회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미국국회에서 무기대여법을 다룰때에 전연 관계없는 한국의 북양어업을 저해하는 문제를 거기에 붙여서 북양에서 우리들이 산 연어나 송어를 잡을 경우에는 한국의 군원내지는 원조를 저해하겠다는 의미의 부대 조건을 붙인 것을 우리는 수일전에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하천에서 큰 연어가 돌아오는 것이니 그것은 미국의 고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연어는 일본에서도 하천에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양식하고 있고 「카나다」의 하천에서도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해상에 있는 이 연어의 본적이 미국의 연어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상에 있는 연어잡이를 미국이 좁이성을 잃은 것같은 상태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 자주독립 국가로서 지극히 유감된다고 생각 아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보문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金益俊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대표로서 이 기관에서 이 시간에는 한번 의무당국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17항에 부대해서 한번 설명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李孝祥 의무부장관 설명해 주십시오.

○외무부차관 尹錫憲 지금 朴己出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같이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연어잡이에 대해서 미국상원에서

우리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연어잡이를 중지할 때까지 대 한경제원조를 금지 한다는 그러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청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충분히 미국 정부에 통고 했고 또 앞으로 9월 10월에 있을 한미어업회담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가지고 그러한 부당한 조치가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마침 그 협약당사국에 미국, 일본, 캐나다, 즉 북태평양어업협정의 당사국가가 다 회원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서양 참치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당사국이 됨으로써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연어잡이 기타 어업문제에 대해서도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기반을 닦는 그러한 기틀이 되겠습니다. 삼의하셔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8.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비준에 대한 동의안

(16시18분)

○의장 李孝祥 그러면 18항 19항은 잠시 뒤로 미루고 제20항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무위원장 車智澈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원장 車智澈 의장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2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간 조세협약비준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

세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주민세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 기업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종합 과세하는 방법으로써 이른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중과세 회피방법으로서의 외국에서 납부 할 조세에서 공제 한다는 이른바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서에 청구권자금 거래와 자본재 도입계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영업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가 맺은 최초의 이 조세협약은 위에서 말씀드린 총괄주의 원칙과 양국간의 2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 하도록 하며 제반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각각 다소의 세수 감소는 예상되나 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비준할것을 동의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만장 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 및 과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비준에 대한 동의안

(정 부)

(부 록 기재)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20항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으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16시 21분)

○의장 李孝祥 그러면 그 다음 제21항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尹在明의원께서 심사 보고 하시겠습니다.

○내무위원장대리 尹在明 정부청사 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청사 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 4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
70년 5월 13일자 국사의제 374호로 심사
회부된 정부청사 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
률안을 1970년 6월 1일 제73회 임시국회 제 2
차 내부위원회에 상정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그 취지는 정부청사조정사업을 당
초 5개년 계획 보다 앞으로 5개년 연장하
려는 것이므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조치
로 인정되어 전원 이의없이 의결 하였습니
다. 여러의원들께서도 정부가 제안한 정부청
사 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20.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2항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부위원회 간사
尹在明의원 또 한번 심사보고 해 주십시오.

○내무위원장대리 尹在明 도로교통법중 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로 부터 제안된 도로교통법중 개정법
률안을 당 내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새로이 등장
되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방법 및 교통
안전표지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격히 늘
어가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사항 및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항등
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

물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에 대한 교통규제사항을 신설하고

둘째는 유료도로 관리자에게 교통안전 표
지설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세째는 도로상 차선에 의한 차량운행규정
을 신설하고

네째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며

다섯째는 어린이 보호규제를 신설하고

여섯째는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이와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당 내부위원회에서는 대체로 타당하고 시기
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비하여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는 정차
및 주차위반차량으로 교통의 소통에 위협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긴급조치를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맹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 내부위원회에서
는 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의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과 맹인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 수정
하고 그밖에 자귀를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여 야 전원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당 내부위원회의 수정안은 유인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가해
진 자귀와 체계의 수정도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께서 당 내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 2.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내무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
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21. 양곡관리기금법안

(16시27분)

○의장 李孝祥 다음 제23항 양곡관리 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文太俊의원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농림위원장대리 文太俊 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4월 9일자로 정부가 제안한 양곡관리기금법안을 제73회 국회 제3차 제5차 및 제 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측의 제안 설명과 정책질의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법안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신속성있게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양곡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입법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내용에 있어서 미비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자귀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 2조에 대상곡중에 양곡관리법상의 대상곡종을 감안하여 「수수」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둘째 양곡관리법 제 3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과 매입 및 판매가격이 기금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 9조 기금의 용도, 1항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을 「양곡관리법 제 3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하는 양곡 및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째 제 13조 2항에 자귀를 수정하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양곡관리기금법안 (정 부)
2. 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림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2. 입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16시 30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4항 입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文太俊의원 또 한번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농림위원장대리 文太俊 입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1970년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한 입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7월 6일부터 1970년 7월 13일 까지 제74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 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청취한 다음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입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 일률적으로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는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 또는 입산물의 채취 및 훼손이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산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입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래의 입산물 반출시에는 일률적으로 반출증을 소지토록 규정된 것을 단속업무의 집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소량의 반출과 입산물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서는 반출증 없이 반출 할 수 있도록 유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째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이관하고 기타 조문의 불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

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입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정부 원안 대로 가 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3. 검역법중개정법률안

(16시 34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申東旭의원 심사보고 해주세요.

○보건사회위원장대리 申東旭 검역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제간의 정기선인 「철타」 및 「콘·태이너」형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투묘(檢疫投錨)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검역조사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로 구서(驅鼠)훈증소독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에게 위학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실시한 경우 그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째 1970년 6월 17일 제73회 국회 제 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0년 6월 18일 제73회 국회 제 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검역법중 개정법률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에 대해서는 신민당의 차己出의원 질의해 주세요.

○차己出의원 해안검역소법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제안 한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마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제 식민지때와 달라서 항구가 개방되어있고 외래손님이 옛날에 비해서 수십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응당 검역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대 釜山이나 仁川같은 큰 항구의 검역소 마저도 의사가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시설이 파괴되어 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가운데에 있어가지고 특수한 배가 검역소가 없는 곳에 들어 왔을 경우에 의사 내지 기술자가 아닌 민간업자로 하여금 검역의 임무 일부를 대행한다 하는것은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법률을 집행하는데 앞서서 할일은 기존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을 충분히 보충하고 강화해야 된다 하는이 조치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실정을 말씀해 주고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있나 없나 하는데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곧 지금 여름이 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에 우리들은 群山을 중심으로 호열자가 유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상에 있어서 호열자가 유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중대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논의한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우리들이 물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콜레라」문제를 두고 「콜레라」다 혹은 「콜레라」가 아니다 라고 판정에 시일이 걸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콜레라」가 침입하는때는 반드시 그 경로가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나라의 群山항을 중심으로 해안검역소의 인원 내지 기술의 부족으로서 群山항에 들어오는 외항선박으로부터 「콜

해라]가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보전당국자가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북 간첩
이 「폴라라」를 여기에 살포한 것인지 이 점
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6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우리들 연
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일대를 어떤 과
학 연구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데
에 의할 것 같으면 浦項 忠武 麗水 木浦 群
山 蔚山의 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 가
운데에는 90.9% 「비브리오」균이 있고 거기에
있는 고기에 33.9%의 「비브리오」가 있고 라
는 결과가 보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세계보전국제거구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
은 호열자 유행지가 아닙니다. 이런 유행지가
아닌 지역에 들어가서 바다물에 90%이상
의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
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끝
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金
日成정부에 비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세계앞에
내세워서 여쭙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간첩이 호열자균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에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적어도 전문가가 보고 납득될 수
있는 여건이 설명되어야 그것이 납득되는
것입니다. 더더놓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호열
자가 群山에 들어 왔는데 이것은 이북 간첩
이 뿌리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 국제
적인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와 연구를 하지
않았고 앞서 그 당시에 호열자가 침입한 경
로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사태는 명
백히 되겠습니까마는 일반의 경우에 群山항
구에 「비브리오」가 들어와서 호열자가 났다
고 한다면 그것은 의학상식상으로 볼때 群
山항구에 있어서 검역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이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간첩이 뿌렸다고 단정했으며
그것을 국제적으로 내놓고 나라 체면을 손상
안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탁컨대는 적어도 과학적인 문제를 토대

로하는 제사전에 대해서는 세계의 과학적
인 위치에서 검토할때 그것이 납득될 수 있는
사건에서 발표되어야 정부 내지 국가의 체면
이 서는 것이지 그러한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기분적인 자세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발
표하는것은 지극히 나라의 체면상 해롭다
는 것을 한마디 부언하고 금후 한층더 신
중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아까 부탁한 몇마디
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李孝祥 보건사회부장관 설명해 주십
시오.

○보건사회부장관 金泰東 지금 朴己出의원
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외래여객이 최근 급증하고
우리나라 항구가 개방되어 있는 만큼 검역
소의 시설과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 검역법중 개정법률안에 보면 의사도
아닌 민간인에게 검역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존 검역소의 시
설 인원은 느리는 것이 좋지않느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번 검역법중 개정법
률안에 내놓은 것은 「페리」호와 「콘테이너 시
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종래의 현존 법규
에 의하면 외항에 일정한 투표장소에서 검
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여객들이 외항에서 장시간 머물러서 검역을
받은 후에 내항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고 여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낸것이고 또 민간
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혼중소독입니다.

선내에 오염지구로부터 들어온 선체에 대
해서는 혼중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것은 맹독성이 있기때문에 지금 한정된
검역소직원으로 하여금 이 혼중소독을 실시
한다면 이 소독을 한사람은 최소한도 열흘
동안 쉬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독에 쏘여서
열흘 쉬어야 하는데 아까 차의원께서 근심
해 주신그대로 충분한 인원이 있으면 모르
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그 열흘동안에 또 다
른 배가 들어 왔다 그러면 또 검역소 직원
이 몇명 나아가서 소독하고 들어와서 열흘
또 쉬다. 이 겹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기술이 있는 인원을 갖춘 그러한 민간인에
게 위탁 대행을 시키고 대행시켰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한 댓가를 지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의원께서 근심하시는 이러한 「페리」호나 「콘테인」호에 의해서 검역업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개정해서 이미 증원조치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 방역사상에 문제가 되었던 「콜레라」용에 관해서 몇 말씀 말씀이 제했습니다.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국민보건에 경중을 울리고 또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끼친데 대해서 방역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죄를 말씀 드립니다. 「콜레라」다 아니다 해서 시일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콜레라」다 아니다 해서 시일이 걸린 것은 역시 제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자를 동원 했던 바 이것이 호열성 기타 몇가지 점에 있어서 종래에 보던 것과 좀 다르다 해서 이것은 「비브리오」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콜레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책임 있는 당국에서 발표가 업치락 뒤치락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침입경로가 판명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결국 외항선에 대해서 군산항에 입항한 외항선에 대해서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역을 못한 까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 「콜레라」상습지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각지에서 목재를 실은 배가 4척이 들어와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후에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서 어선이 매개를 했을 수도있다 하는 점도 있다 해서 아직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침입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고 역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남서해안 일대를 조사한 결과 해수 중에 90.9%의 「비브리오」균이 있고

여기에 서식하는 어류에도 다수의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표 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서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 이익에 상반되는 내용발표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첩이 세균을 가지고 와서 뿌렸다 하는 발표를 보건상이 했다하는 말씀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제 전임자나 혹은 제 자신도 이런 발표를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WHO에 부탁을 해서 제1차 조사단이 왔을 적에도 어선이 매개했을 염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간첩이 들어온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느 해상이나 혹은 다른 지점에서 오염이 되어서 들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이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공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또 한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중개정 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16시 4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6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申東旭의원 심사보고를 해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장대리 申東旭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습관성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습관성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법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서 본법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의 실효성있는 관리의 구현과 효율적인 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 다음에 수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

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트로 칸나리놀」을 습관성 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습관성 의약품을 함유하나 본법의 규제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한계규정을 두었으며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가 할지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습관성 의약품의 취급에 대하여 제한토록 하였으며 면허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고제도를 지정제로 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습관성 의약품 수출입자의 보고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에 융통성이 있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1년간 품목허가를 유보토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 상호간에 습관성 의약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의 원료사용에 대한 신고제를 승인제로 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의 원료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자격을 상실한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가 소지한 습관성 의약품을 양도할 경우 당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 감시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벌칙을 강화하여 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제로 1968년 12월 5일 제67회 국회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19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70년 6월 18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동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본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정 부)

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5 1970년산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1970년산하곡양비교환율결정에 관한 동의안(계속)

(16시 55분)

○의장 李孝祥 그러면 아까 보류해 두었던 의사일정 제18항 또 제19항을 다시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 朴永祿의원의 13인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朴永祿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永祿의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집권한 이래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양곡의 생산의 양과 그리고 물가를 조작해가지고 곡가의 인하를 강요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출혈가격으로서 이를 책정해가지고 대 농민수탈정책으로 일관을 해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부는 마치 양곡폭리상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양곡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처사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산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양산의 양곡이 증산이 아니라 반면 이것이 점점 감소되어가지고 8월15일 해방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천만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곡을 외국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그 가득액 2억5,000만불보다도 훨씬 많은 즉 3억불에 가까운 외국의 양곡을 도입하고있는 이러한 양곡의 수입국가로서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항상 증산 수출 전철을 임버릇처럼 부르짖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부는 국산품은 만 물건에 있어서는 국산품을 부르짖지만 양곡에 한해서만은 국산품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곡을 장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곡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농민경제는 총파탄에 들어갔고 농민경제의 파탄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일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속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 제출된 곡가 수매가격에 있어서도 수매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12%를 인상해가지고 이것을 책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 물가 상승률에 비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낮은 비율로서 책정이 되었다 지금 농촌의 실제가격과 지금 책정하는 가격이 마치 차이가 있어서 농민을 위한 가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매상하려고 하는 이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매상을 하는 그 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1,700만석의 하곡이 나오고 있는데 이 1,700만석중에서 정부의 발표에만 의한다고 하더라도 약 420만석이 시중에 나와서 출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행정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또 양곡과동을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진 정부라고 할 것같으면 이 시중에 나오는 양곡만은 이것을 전량을 매상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이 없다고하는 이런 핑계로로다가 415만석중에서 186만 2,000석만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은 양곡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곡가를 오히려 하락시켜서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에 이 하곡매입가격에 있어서는 하곡을 생산자로부터 보장된 생산비가 보장된 가격으로서 이것을 수매를 해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할 것없이 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한편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가지고 곡가와 기타 물가의 안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파탄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아래 이번에 맥류의 매상에 있어서는 우리 신민당이 주장하고있는 이중곡가제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1970년도 산 하곡의 수매가격을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서 이것을 수정할 것을 정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제출되어있는 이 가격에다가 생산장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1,000원씩을 더 가산한 가격으로 이것을 매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곡가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을 기준으로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가격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얼마 드니 이 생산비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 각 계층의 여러가지 부의 편중... 이런 사회보장적인 입장에서 감안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정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나라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 나라는 지금 농민이 전부 농토를 버리고 농사를 안짓고 도시로 흘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증산을 꾀하려고 할것 같으면 정책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정책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다가 생산 장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1,000원씩을 이것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그 가격을 말씀 드린다면 걸보리 가마당 50kg들이입니다. 이것을 2,248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걸보리 쌀 가마당 이것은 76.5kg이것은 4,445원 쌀보리 가마당 60kg 이것은 2,726원 쌀보리 쌀 한가마 76.5kg에 대해서는 4,039원 이런 가격으로서 매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매상량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생산추계량을 볼것같으면 1,700만석 가운데에서 이 1,700만석중에는 시중에 나와서 출회할수있는 상품이 24.4%로 계산을 해서 415만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15만석을 전부 매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정의 허락이

용납치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일반 재정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세감면 대상자를 갖다가 축소를 하고 그리고 각종농사 보조금의 일부를 여기에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매자금은 잉여농산물 가격 판매대전 이것 많이 있습니다. 도입양곡 판매대전 양곡관리기금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또 농사자금 또 농업경제사업자금 사료조절자금 이러한 것을 전부 전용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능히 충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항상 모든 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동한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농민의 기구를 대표할 수도 있는 농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농민만을 수탈하고 있는 이러한 수탈기관으로서 전락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에 쫓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저 땅만 파고 정부의 처사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애기에게 젖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정치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울지 않는 애기에게 젖을 주는 정치가 이것이 정치다 참다운 정치다. 농민이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곡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올라올 여비도 없고 또 그런 「파워」도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노력을 안하고 돈이나 벌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지금 사회에

많이 진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리들에 붙어 있지 농민이 한사람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곡가를 올려달라는 얘기 안합니다.

만일 이중곡가제도 같은 것을 실시 할 때에 재정이 200억이 든다고 가령 칩시다. 농민이 어떤 「파워」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요로에 쫓아 다니면서 우리 농민에게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해서 우리농민에게도 200억의 이익이 온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도 서슴치않고 정부에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5부 정도의 정치자금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와서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이중곡가제도 문제도 오늘날 활발히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 하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농촌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판매 돈을 몇100억씩 쓸적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안하지만 농촌에 돈을 쓴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이고 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지금 농민을 수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민주전당이 오늘날 비참한 상태에 있는 농촌을 구출해야 할 시기는 왔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곡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1,800만 농민에게 좋은 소식이 오늘 가 주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써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季祥 다음은 신민당의 李載瀾의원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李載瀾의원 정부는 금년산 하곡 1,862만석을 결보리 한가마에 1,686원의 가격으로 매상한다고 그렇습니다. 결보리 한가마에 1,686원에 사들인다고 그렇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작년보다 15%의 인상된 가격이요. 그때로 내버려 두면 농민들은 금년 추수한 하곡을 그대로 장에 갖다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폭락해서 곤란을

불거니까 걸보러 한가마에 1,686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사 주어야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의 재정은 곤란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만 같은 말이라도 1,686원이라는 것은 전혀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작년 보다는 조금 올려서 사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라도 좀 누그러질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일본에 갔다 오는 길에 北海島에서 생산되는 과거의 감자보다도 4,5할이나 더 증수되는 좋은 감자종자를 짚어지고 왔다. 이것이 신문에 났어! 옛날에 文益漸이 중국에 가서 목화씨를 처음 보고 목화씨를 담뱃대엔가 붓자루속에 집어 넣고 왔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연상하면서 농림장관의 감자씨 짚어지고 온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일년에 3,4천만석의 외곡을 수입해다가 겨우 식량기근을 면하던 일본이 오늘날 쌀만 하더라도 일년에 200만「톤」 이상이 남아 돌아가는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왔겠습니까. 일본의 땅덩어리가 늘었습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었습니까? 인구는 늘고 땅덩어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일본은 10수년동안에 쌀이 남아 돌아가서 쌀을 처치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다가 30만「톤」 40만「톤」을 20년 30년씩 이자없이 꾸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왔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에 가서 군소재지를 다녀 보면 반당 생산고 한섬을 더 늘리자 300평 논 한마지기에 일년에 한섬의 쌀을 더 증산시키자 하는 간판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돌아다녀 봐야 그런 간판 없어! 그래도 불과 10몇년만에 그네들은 식량부족한 나라에서 식량이 남아가는 나라로 전환 됐어!

감반운동을 일으켜서 농사를 덜 짓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농촌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그래도 남아 돌아가지 할 수 없이 1년에 돌아가면서 논이나 밭을 농사를 안짓고 묵히도록하는 장려금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650만석, 금년에도 1,300여만석 작년에는 2억 불 금년에도 1억 5천만불의 외곡을 들여다 먹게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농산물가격을 농가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보장해주는 이 문제 하나로서 일본은 저와같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와같이 된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장관 주관하에 농산물 생산가격 심사위원회라고 하든가 하곡가격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되는데 농림장관도 안나오고 각 관계장관도 안나오고 위원인 차관들도 안나오고 겨우 과장이나 대신 보내고 이래가지고 불과 2,30분만에 끝이 났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보도를 들었습니다.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농촌의 근대화가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 이러한 농산물 가격정책을 가지고는 영구히 가망없는 것입니다.

5월18일 일본「엑스포」한국대회에 갔던 丁一權구총리는 그 기회에 일본천황 裕仁을 만났다 합니다. 일본 천황이 丁구총리에게 「한국의 수도서울은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데」하는 물음에 일본의 東京만은 못해도 여타의 도시정도의 발전은 돼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裕仁이 다시 「한국의 농촌은 어찌냐?」 「흉년이 들어서 작금 2,3년동안 대단히 곤란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 식량을 도와주어서 그대로 견딜만하다」하는 얘기를 주고 받은 것을 일본 외무성에 그러한 것을 기록하여 보관된 기록을 통해서 전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 왔다 가는 모든 외국사람이 서울서 뒷골목을 보고 그리고 농촌을 보고는 다 한 마디씩 하고 가는 것이 한국의 농촌의 낙후성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저 서울 부산사이에 벌어져있는 저 농촌 저기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1,650만석의 외곡을 들여 왔고 금년에 1,300여만석을 들여왔을적에 과연 한국에는 그만큼 양곡이 부족되어서 들여온 것입니까?

제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호남을 비롯해서 영남지방에 흉년이 들었어! 정부 통계를 보면 제작년은 평년에 비해서 250만석의 쌀이 감수가 됐다 합니다.

평년에 우리가 모자라는 쌀은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불것같으면 약 150만석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년에 150만석이 부족되었으면 400만석의 쌀이 부족했을텐데 왜 작년에는 650만석을 들여왔느냐 이 말이에요. 쌀만 650만석을 들여왔어 흉년이 들었다고해서 외국 쌀을 더 들여다가 이 백성 배불리게 먹일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으면 쌀먹던 사람도 보리를 먹고 보리먹던 사람도 죽을 먹어서 옛날에 임금도 흉년이 들면 궁중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고 국민들에게는 절식령을 내려서 기근을 절약과 인내로써 극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250만석 쌀 감수된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650만석을 들여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쌀 팔아서 고속도로에 처넣었지요 외국에서 차관이 인제 잘 안되고 국민의 부담이 한계선을 도달하니까 남은 쌀 일본같은데에서 의상으로 들여오기 좋으니까 그 교섭해다가 그 쌀 팔아가지고 경비 쓰자는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긴 얘기는 하지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정책속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겉보리 한가마니에 1,686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갖다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가을에는 쌀 한가마니에 4,350원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세금 내야 하고 등록금 내야 하고 뭐 내야 하고 비료값 내고 도리 없이 6,000원 이상의 생산비를 들이면서도 이 현금이 필요 해서 4,300원에 갖다 팔아먹고 있고 보리 한가마니에 2,000원 이상의 생산비를 들이면서도 할수 없이 1,686원에다가 갖다 팔아먹고있는 이 농민을 위해서 이 정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비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한국비료에서는「톤」당 2,200원에 생산이되고 증주비료에서도 거의 2,200

00원에 생산이 되고 그러나 제3비와 제4비에서는 2,800원에 생산이 되는 호남비료에서도 2,900원에 생산이 되는테어쩌서 같은 요소한「톤」을 증비나 한비에서는 2,200원에 생산되는 것을 3비와 4비와 호비에서는 2,800원에 생산을 하도록 되어있느냐 이 호비와 3비와 4비를 그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할수없이 비료는 남아돌아가는데도 이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일괄 인수를 시켜가지고「풀」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배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46만「톤」이라는 비료가 남아돌아가고 금년의 수급계획을 보더라도 40만「톤」이 남아 돌아 갑니다. 오늘 통과되었는지 있다가 심의해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이 정부가 인수한 이 비료를 처리를 못 하고 40억 50억씩을 선돈을 대주고 남아돌아가는 비료의 보관유지를 위해서 농협은 막대한 경비를 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웬만큼만 공장을 지면 2,200원 하면 한「톤」씩 생산되는 것을 어떻게 공장을 짓길래 2,800원짜리 비료를 생산 시켜서 공장은 아무 손해도 보지않고 생산되는 그 가격대로 정부가 인수해 가지고 이 가격을「풀」해서 농민에다가 배급을 시켜주니 농민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공장 망해서 끝나는 날까지 대대손손이 잘 못 된 공장의 비싼 생산가를 물어주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민당에서 2중곡가제를 주장하는것을 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생산비 정도는 물어주어야하니까 할수없이 이런 가격을 낼거예요. 나는 신민당의 2중곡가제 이것 가지고도 안된다고 보아요. 근본적으로는 무슨 어려운 난관이 있고 무슨 애로가 있더라도 여기에 획기적으로 단호하게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결심을 이 정부가 한번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장을 지어 놔습니다. 부실에 여러가지 이 유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이대로 빈곤속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농민의 소득이 이와같이 저탁되고 있는 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생

산품은 결국 결핍된 국민의 구매력 속에서 공장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순환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1,500만의 농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농산물가격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가 국운을 건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않고 작년보다 15%다 또 내년엔 가서는 작년보다 15%다... 그러나 바닥을 훑어 들어가면 그 심원이 얕은데다가 15% 15% 백년 올려 봤대야 뒷따라 갈수 없는것입니다.

의원동지나 우리가 요새 어찌다가 한식집엘 갑니다 좀 들어 앉아서 오손 도손히 얘기할 만한 한식집에 가면 자세히는 몰라도 1,500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점심 먹는 값이야.

보리 한되면 쌀이 한되라고 조상부터 일러온 이 걸보리 한 가마에다가 1,686원을 주면서 농민이나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않고 작년보다 낫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막 팔아 먹을테니까 이만하면 좋다 이런식의 농림부장관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잘못 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넘겨 주어야 합니까?

넘겨줄때 넘겨주드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의원들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반대고 찬성보다도 이거 한마디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도 전혀 동감이실줄 압니다.

○의장 李孝祥 또 다른 의원 발언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의 원안은 알기쉽게 말해서 한가마니에 1,686원 朴永祿의원 수정안은 거기다가 1,000원을 더 주자 해서 2,686원 그러한 차이 을시다.

그러면 이제 수정안 부터 먼저 볼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91인 가 17표 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원안 표결은 재석 87인 가 75 부 없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것도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안된 관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재석 91인중 가 80표 부 없습니다. 가결된 것을...

○李載瀧의원 (의석에서) 가에 과반수만 된다면 통과를 선포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의장 李孝祥 에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26. 대한건설공사법중개정법률안

(17시 36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27항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柳光鉉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위원장대리 柳光鉉 의사일정 제27항에 상정된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5월15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74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한바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증액은 정부건설사업의 수요전망과 매립지 매각의 상승에 따른 자본 적립금증가 그리고 공사의 보유 재산 실태등을 참작할때 개정안에 40억원이 자본금 측정으로는 앞으로 1, 2년내에 또 자본금증가에 수반된 증자를 위한 법 개정

이 예상되므로 6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1조에 규정한 대한건설공사의 업무범위의 보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정안 취지에 맞추어서 건설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할수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조 3호에 소형선박을 추가한바 있었습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정리로 삭제의견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받아들여 현행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정부)
- 2.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2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 (17시 40분)

○의장 李孝祥 다음은 28항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金裕璋의원 심사보고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裕璋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과거 군에 의하여 징발사용되었던 민간재산은 1971년 12월31일까지 매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징발보상증권 23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의요청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1970년 7월14일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진지하게 심의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 (정부)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8.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7시 43분)

○의장 李孝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金斗鉉의원 심사보고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斗鉉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1970년도에 입체해서 지불해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20억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있어 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동의요청 해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7월14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1970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오」하는 이 많음)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29. 외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

(17시 45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0항 외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金裕瑋의원 심사보고를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裕瑋 외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54조와 외화국채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데 국제자본시장에서 외화국채를 3천만불까지 발행할 것을 한도로 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금액은 2,000만불 내지 3,000만불 범위 내로 하고 발행방법은 공모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 및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화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화자금을 일괄조달함으로써 통상거래의 부족을 보전하고 자본거래의 질적 충실화를 기함과 함께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 외자조달능력을 배양하여 국제금융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발전상을 해외에 널리 인식시키고자 하는데에 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970년 7월 15일 제 2차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외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

(정 부)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0항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0. 재정차관(철도사업)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17시 47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1항 재정차관(철도사업)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金斗鉉간사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斗鉉 철도사업의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철도차관으로서 지난 1969년 12월 23일 제 72회 국회 제 8차 본회의에서 3,000만불 규모의 차관을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세계은행은 당초 중형으로 도입하려던 「디젤」기관차 50대를 대형으로 변경하고 일반화차 2,000량을 추가해서 도입량이 2,740량으로 수정되어 세계개발협회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해서 차관 금액을 5,500만불로 증액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추가동의안이 요청된 것입니다.

재원의 내용을 따져보면 세계은행이 4,000만불 세계개발협회가 1,500만불 해서 합계 5,500만불 차관으로서는 세계은행이 거치 4년 상환 21년 연리는 거치기간중에는 2% 그리고 상환기간 중에는 3% 그리고 세계개발협회가 거치 10년 상환 40년 이자는 없고 대신 수수료가 1년에 0.75%로 되어 있어 장기간의 유리한 차관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70년 7월 14일 제 2차회의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철도사업의 긴요성과 차관의 유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재정차관(철도사업)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정 부)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1항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1.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17시 50분)

○의장 **李孝祥** 제32항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간사 **金裕瑋**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裕瑋** 농업차관의 1개사업의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70년도 AID 개발차관자금 2,000만불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차관과 원자재차관으로서 먼저 농업차관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관은 1,000만불로서 이것으로 「불도자」 200대와 기타 중장비를 도입하여 이를 경지정리와 대지조성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차관의 조건은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30년 그리고 이자는 거치기간중에는 2% 상환기간중에 3%로 되어 있는 장기저리인 유리한 차관입니다.

다음 원자재차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0만불의 차관으로서 이 차관은 이미 5차에 공한 「프로그램 론」으로서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와 그 부분품을 도입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차관조건도 농업차관과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개의 차관이 모두 농촌근대화와 국내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970년 7월 14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행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2.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7시 53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신민당 **金元萬**의원의 13의원께서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金元萬**의원께서 이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金元萬**의원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일시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국회본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정부는 기구를 너무 확장하지를 말고 좀 축소시켜 가면서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모든것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으니까 심사가 끝나게되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확장할것은 확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출해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한 기구를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소관에 관세청이라고 하는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관세는 조세 연수의 불과 17%밖에는 해당되지않는 세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관세청을 또 신설을 한다 국방부에서는 병무청을 신설을 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를 하고 병무청으로 하여금 사무를 통솔하도록 한다 하니까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의무부에서는 영사국을 두고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국을 두고 문교부에서는 체육국을 두고 상공부에서는 통상진흥국을 두고 무임소장관실에서는 적당한 인

원을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에 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팽창한 기구가 많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기구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참된 개혁실사위원회가 지금 심사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체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줄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10년전인 60년도에는 1년의 총 예산이 613억이었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187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와서는 6,764억의 예산으로서 10배 이상이 팽창되었습니다.

또 조세부담은 60년도에는 187억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관세를 제외하고 내국세만이라도 3,440억으로서 19배나 팽창이 되었습니다.

거의 20배가 지금 팽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산에 대한 연도 내용을 검토해 보면 60년도에는 일반예산은 불과 23.2%밖에 안 되던 것이 70년도에는 일반예산이 놀랍게도 53.1%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수는 60년도에 23만 7천명밖에 안 되던 것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얼마나 늘었느냐 하게 되면 45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배로 늘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공무원의 수요만 자꾸 팽창시키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60년도에 투융자는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47.6%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소비 예산인 일반 경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과 투융자는 23.7%밖에 안 됩니다.

이와같은 상태에 자꾸 공무원수만 늘려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회는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주고 국민이 부담하는 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의 수를 무작정하고 늘이는 것만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구를 축소시키고 사무를 간소화시키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 열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소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과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7,200원입니다. 계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9,000원밖에 안 됩니다. 서기급은 16,000원밖에 안 되고 기능공에 있어서도 일등급을 받는 사람이 19,000원이고 8등급을 받는 사람은 13,000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공과금을 제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고 하면 불과 만원 내외의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부정 부패 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 높아가고 있어!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생활보장을 안시켜 주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공무원들은 국민은 부정 부패... 건 공무원을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생활보장을 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국가에 봉사하도록 해 주어야 되었는데 불과 만원 내외의 돈을 주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더러 생활하고 살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부정을 하라고 또는 부패를 하라고 정부 스스로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수를 자꾸 늘이고 기구를 확장하는 것만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는 항상 와서 기구를 확장하는 거 좋아 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의 수를 자꾸 늘리는 거 나도 좋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행정기구 개혁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 하고 있으니 까 심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그리 급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착수해서 착착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행정기구 개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0년도에 23만명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 45만명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인구의 증가가 있으니 그것은 부득이 한 일 이어나 이렇게 생각 하실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동안에 인구증가는 불과 4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증가는 100%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얘기 하기를 외국의 예를 들어 많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영국은 어떻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집행 을 해야 되지 외국의 예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공할 일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은 타의에서 아니라 있는 공무원 들로 하여금 성과 열을 가지고 국가에 봉공 하도록 하고 은 국민이 공무원을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활보장을 시켜 주어야 된다. 생활보장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람만 늘리고 기구를 확장 시킬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줄여 가면서 그들에게

생활보장시켜 주도록 이러한 도리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늘은 것이 청이 돌이고 국이 여섯입니다.

거기다가 무임소장관실 까지도 공무원을 배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해서 자꾸만 확장시키고 공무원만 증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에 대한 봉공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자행 할려고 하는 의욕만 더 드높혀 주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연후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국회의원입니다. 월 수만 있으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국민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행정부를 선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가 내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식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에서 자기의 할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당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의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해주 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李孝祥 지금 보류동의안이 처리가 된 뒤에해야 심사보고고 무엇이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류가 되면 심사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보류동의에 대해서 토론이 없습니다.

즉각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분 기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성원이 안된 모양입니다. 성원이 되도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78명 입니다. 86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에 가 15표로서 본 보류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尹在明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요.

○내무위원장대리 尹在明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본다면,

첫째 관세행정의 쇄신강화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관세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며,

둘째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고,

세째 외무부에 영사업무를 위하여 영사국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에 체육업무를 위하여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업무를 위하여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며,

네째 내무부장관소관사무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다섯째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를 새로 규정하며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출 대사 또는 공사로도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정책질의를 통하여 심사한바 그 내용이 6개부의 기구개편안으로써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의견이 나왔고 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약된 의견을 얻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총무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장관과 문교부 상공부 양차관을 각각 출석시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1. 외무부의 영사국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의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은 그 업무의 강

화 쇄신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이며,

2. 내무부장관 소관사무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피하나 소방의 장기계획이나 기본시설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하며 서울·부산 양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도 가급적 빨리 이양하여 소방업무의 2원화에 따르는 제반 폐단을 최소 한으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3. 무임소 국무위원의 직무규제나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의 보직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별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무임소 국무위원을 무임소장관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4.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하고 현 세관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는 것은 일선세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다만 현 세관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는 것을 관세국으로 개칭하기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5.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고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는 것은 병무행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다만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는 것은 통수계통상의 문제와 예비군 운영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불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7월 11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이를 접수하기로 재석 14중 가 10 기권 4로 의결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유인물로서 배부되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다음은 총무처장관의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총무처장관 徐靈敎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처리에 골몰하실을 보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의원 여러분에게 수고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번 개정과는 달리 순전히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개편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이 기구의 과대한 팽창을 계속 통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행정수요에 비추어 도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문제만을 부득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세행정의 업무량이 방대하여짐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업무통제 범위가 너무 과대하므로 관세행정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은 재무부 장관이 계속 관장하게 하며 집행기능에 관하여는 보다 강력하고 단일적인 지휘 감독체제가 확립된 관장기관이 요청되므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 하였으며,

둘째 병무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본부에 9개국과 19개 직할기관 및 합동참모회의 각군등 모두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과대한 지휘폭을 조정하고 병무행정에 관한 중앙관서의 다원적인 업무의 통제를 단일화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강력한 집행체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방부에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여 동국 기능중 정책기능은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집행기능은 병무청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외무부 통상국과 아주국에서 분산관장하고 있는 영사업무를 그 양의 증대와 주요성으로 보아 이를 통합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영사국을 신설하고 출입국 업무가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지방사무소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국을 그리고 문교부에는 국민체위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진흥을 관장하기 위하여 체육국을 각각 신설하고 상공부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의 확장에 따라 통상진흥국을 불가피하게 신설 하였읍니다.

네째 소방업무를 각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내무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와 그 보좌

요원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끝으로 외무공무원의 국내의 외국기관과의 협의활동과 본부 및 재외공관과의 인사교류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도 보직에 관한 특수적인 규정이 있음을 여러 의왕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같 습니다만 이를 조금더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현재 1급 상당인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을 대사 또는 공사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발전을 성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의 기능을 안정과 질서의 수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변동의 촉진제로 보는 발전행정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르는 행정요인의 변동을 신속히 발전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술화 전문화 됨에 따라 경제자립 근대화의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개관적인 행정수행에 기동성 있고 합목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도 이와같은 견지에서 그 의의를 깊이 양찰하시어 충분히 심의 하시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 2.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내부위원장)
-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신민당의 高興門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高興門의원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중에 관세청 신설에 대한 점에 대해서 좀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소관은 내부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관세청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건이 어저께 비로소 재정경제위원회에 안건이 제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건이 제의가 되고 보니 벌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틀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사또 떠난 뒤에 나팔부는 격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토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소속 내무위원한테 물어보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金在淳의원으로부터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의견을 달아 보낼수 없으니 이에 이의가 있다고 할적에는 본회의에서 토의할수 밖에 없다. 이것으로써 보고로서 그치고 만것입니다.

여기에 재무부장관한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지금 제도면과 또 집행면에 있어서 분리를 시켜야지만 더 원활히 잘 된다. 이러한 데에서 이 개정이 필요하고 또 관세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지금 관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대통령령으로서 이 관세대상에 대해서 면세에 대한 대상을 갖다가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일년에 관세수입에 있어서 적어도 60% 이상 70%가 면세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큰 모순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기구가 없기때문에 또 기구를 말하자면 새로 신설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서 이 면세대상을 갖다가 많이 만들음으로써 오늘날의 이 관세행정에 대해서 큰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물론 법의 절차로 보아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 반드시 꼭 법률적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과거의 [관계상 그 소속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은 오늘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로 충분히 재경제위원회정에서 의견을 갖다가 들은 뒤에 본회의에 통과를 갖다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아울러서 답변을 갖다가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李孝祥 재무부장관 답변해주시요.

○재무부장관 南應祐 高興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정부의 기구가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비가 더 든다는 것도 생각을 했고 될수 있으면은 최소한의 기구를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부득이 관세청의 신설을 허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이미 총무처장관계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의 규모가 확장함에 따라서 저희 관세행정이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각국간에는 관세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은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치고 있어서 저희나라뿐만 아니라 후진국들은 이 상반되는 이 두가지 경향속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관세행정이 점점 복잡 다기화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했고 또 한편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세관의 관기의 문제가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기본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 끝에 저희들은 관세청을 신설을 해서 폭주하는 현업은 관세청에 맡기고 재무본부로서는 세관국을 두어 가지고 좀더 여러가지 관세행정상의 제도적인 문제 또 관세행정의 능률향상에 집중을 했으면은 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高興門의원께서 면세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저희가 시행령을 제정토해서 111개 품목에 면세했던 품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남어지의 문제는 과세제도 전반의 검토와 개정이 없이는 저로서 한결음도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본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기본 과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동시에 징세면에 있어서도 보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생각할 자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이러한 관세청 신설을 요청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위와 합의가 불충분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그러한 2개상임위원회에 관련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품소 양개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 양찰해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다른분 발언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본건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정부 원안대로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찬성하신 분이 101명중 84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3.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18시 36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4항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金守漢의원의 12인이 보류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守漢의원 의사일정 제34항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59조 제1항 대법원의 위원 판결은 대법원판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을 할수 있다고 하는 현행제도에 단서를 붙여서 3분의 2 출석과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류 동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서를 즉 현행제도 그대로 두어야지 여기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대법원 판사의 3분의 2 출석과 출석 판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만이 위원 판결을 할수 있게 하자고 하는 이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위원 위법에 관한 대법원의 적부심사의 일을 봉쇄하는 중대한 악법이라고 본의원은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근자에 있어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유린 제약하는 여러가지 법률이 사태를 이루고 있다시피 하고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처럼 위원 위법의 적부심사에 있어서 소수의견을 말할하려고 드는 이와같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원 위법적인 법의 강

요를 가져오는 중대한 반 국민적인 처사가 된다는 것도 아울러 저는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사법부의 위헌심사권이냐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또 그 우월성을 담보로 하는 고유의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입법권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헌 위법심사권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하려고 매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수있는 사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리 입법부가 위협하는 이와같은 불장난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우리는 명감을 해야 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제야법조인과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같은에서 정식으로 성명을 통해서 그 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더욱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 같은 것이라도 열어서 많은 국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시킨 뒤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졸속하게 이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내게 되는 이 저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법은 보류시키고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후일에 우리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동시에 위헌 위법심사권에 있어서 소수의견을 막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입법 재판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후일에 역사의 꾸지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을 보류하고 앞으로 국회가 보다 더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제야 법조계의 많은 의견을 반영시킨 다음에 이 법률안을 다루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취할바 도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여기에 대한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하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지금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합니다. 여러분 조금 휴식을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李孝祥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다소 여 야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잠시 총무회담을 하려고합니다. 한 15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李孝祥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의의사일정 34항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金守漢의원외 12인이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어서 金守漢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류동의이기때문에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분 기립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재석의원 100명중 가 13표 이로써 폐기됩니다.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간사이신 高在秘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高在秘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서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개정하려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재판 다시 말하자면 법률이나 혹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냐의 여부를 재판하는 것은 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현행 헌법에서는 법원에서 이 헌법재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행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대법원판사의 3분의 2 이상만 모이면은 거기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위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

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종전에 있던 과반수로서 위헌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이것을 가결할수 있는 판정할수 있는 수를 출석한 판사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정할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제 1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헌법이 중요하다 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든 법률이나 혹은 행정부에서 발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한다고하는 이 위헌여부를 결정한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사람이 여기서 새삼 강조하지 아니해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에서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나 형사사건과같이 헌법도 과반수로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합하지 않다고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사에 있어서 한 사건이나 형사에 있어서 한 사건도 과반수의 의결만 있으면 이것을 재판할수가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 즉 위헌사항에 대해서도 과반수로써 이것을 결정할수 있다고 하면은 이 위헌사항을 너무나 경경히 다룬다고 하는 이러한 빈축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즉 국민을 대표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대법원에 있어서의 판사의 과반수의 결정으로써 이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전부가 사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만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원칙은 3부가 서로 견제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사법부가 과반수의 판사로써 위헌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점은 심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 법사위원 일동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점을 이렇

게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내게 된 둘째번 이유로서는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이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복무하고 있는 법관이나 검찰관을 여기서 재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젊은 법관이나 검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연수원이올시다.

종전에는 이 기관이 서울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사법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10년을 이 제도를 해본 결과 역시 법원에 직접 설치해서 여기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우수한 법관이나 검찰관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관계로 해서 이 사법연수원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가지 점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된 이유올시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1970년 6월 15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제 7차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서 이것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아까 金守漢의원께서 이 법률안을 보류하자고 한 그 점에 대해서 관련된 관계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법원조직법 제 59조를 보면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단서를 하나 붙여서 「다만 대법원이 법원조직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할 때에는 대법원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과반수만 가지고서 결정짓는 것이 신중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신중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참 조)

1.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
결시키고자 하는데...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기립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제석 104명중 가 87표 부 17표로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34.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
(20시 46분)

○의장 李孝祥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민사소
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李重載의원 의 12인...李重載의원께서 제안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載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
러분! 특히 본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 35
항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
을 이 자리에서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심의합
에 있어서 특히 공화당의원 여러분에게 호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안건
을 일사천리식으로 넘기시려고 하는 여러분
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안건이야말로 우리 국민전체에게 미치는 이
해관계 그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을 선배의
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1심에서 한해서만 가집행선고를
급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심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못한다. 이러한 법
률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은 만민에 평등한 것이 을시
다. 더욱이 8·15후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과
거에는 국민들의 이해 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8·15후에 국가도 정부도 국
민과 마찬가지로 만민에 평등하다는 이 평
등원칙에 입각한 모든 헌법도 있으려니와 그
러한 정신하에서 입법이 되었다는 것을 여
러분들께서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국회가 국민
의 권한을 더 줄이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권한에 침
해를 가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수 있겠
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호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선배의원 여
러분들이 5·16혁명후에 이 법의 제정에 있
어서 5·16전에 있어서는 이 가집행선고
를 법관의 재량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5·16혁명후에는 도리어 가집행선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법률
개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리
면서 이 법의 제정에 있어 법에 만민의 평
등주의 이 평등원칙을 깨서는 안된다는 것
을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더욱이
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나 국가
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소송에 있어
서 정부와 국가는 1심에서 패소하면 무조
건 아무런 상소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도 상
소하면 의폐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
나 국가는 2심에 또는 대법원에 상소를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
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부나 국가가 민간과 소
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해당된
공무원의 책임이 그 행정기관내에서 문제를
당합니다. 이 문제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정부
나 국가가 1심에서나 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아무런 상소의 이유도 없
고 상소해도 반드시 질 경우가 뻔한 경우에
도 상소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 우리
나라의 법관수가 모자라가지고 법원이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이 법원에 밀려들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법원에 많은 애로가 되어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더우거나 정부나 국가는 상소를 할 경우 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니 무조건 돈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그 책임을 면키위해서 혹은 문책당하는 것을 어물어물 시간을 끌기위해서도 상소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실정이 을시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 법안이 특히 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 권력기관인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는 그러한 서민 대중 그러한 서민층 약한 사람들이 대개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산을 징발 당해서 그 보상을 정부가 안해 주니까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때 그 보상을 정부나 국가를 사랑하는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정부고 자기의 사랑하는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가난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체의 경우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청구소송이 을시다.

이 경우에 1십에 있어서 그 약한 국민의 한 사람이 승소했을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 현행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2십에서 이겨서까지도 가집행 선고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억제하고 짓밟는 그러한 입법행위가 된다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16 혁명 이전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있고 이렇게 되

어있었습니다.

그러나 5·16혁명후에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못된다 하는 견지에서 이 법을 개정 했어요. 그때가지고 2십에 있어서 판결이 난후엔 무조건 가집행선고를 해야만 되겠끔 5·16후에 법을 개정 했었는데 잘 되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공화당의원 여러분들께서 5·16후에 입법된 이 좋은 정신을 도리어 짓밟고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입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더우거나 국가를 상대로하는 이 재산권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선고는 선배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판결이 난 액수에 반액정도밖에 가집행선고를 안하고있다는 것은 이 법의 운용상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리면 정부가 배상을 100만원 해줘야 된다. 이러한 판결이 법원에 내려졌을 경우라도 가집행선고는 약 50만원정도밖에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설명에 있어서 얘기한 것 처럼 가집행선고를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승소한 국민이 다 써 버린 경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 얻어진 다음에 그 재산을 다시 사건이 뒤집어 얻어졌으니 다시 받아 낼래야 받아낼 길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정부나 국가가 빠져가지고 미수금이 미수금 채권이 많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모순점만은 어떤 나라나 어떠한 법률에 있어서나 모순점이면 모순점 그대로 안은채 오늘날 법이 제정되고 있고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일시다.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에만 우월한 권한을 주고 여기에 해당을 안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어서 법의 만민의 평등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짓밟드라도 정부나 국가의 이익만에 치중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점을 재고 삼고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정부당

국이나 특히 법원당국은 적어도 법관들이 1심 2심에서 오판이 없도록 올바르게 법을 운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리드」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1심 2심에서 오판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가집행선고를 해가지고 정부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원당국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재판을 내릴수 있도록 법관을 훈련하고 교양하고 또 이끌어가는데 대법원 당국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끌고감으로써 이 법에 올바른 운용에 치중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러한 불평등한 법을 만들므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특히 공화당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법안안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金守漢의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이러한 국민의 막중한 이해관계가 개제되어 있는 이 법안을 거의 일반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며칠사이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는 사실도 슬픈 사실이 을시다.

적어도 이러한 국민의 막중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은 공청회를 연다든지 혹은 사제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심사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입법을 해야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도 서글픈 사실이려니와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변호사회를 중심으로해서 이 나라 재야법조인들이 이 법안에 거의가 전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셔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보류동의를 냈읍니다라는 아무쪼록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李孝祥 에 따라서 보류동의안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의장 李孝祥 재석 105명 중 가 17표로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안은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高在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高在秘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된 개정법률안이 을시다. 이 개정법률안을 낸 이유는 아까 李重載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라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국가를 상대로한 경우에는 제1심에 한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읍니다라는 그것을 시행하고 보니 2심에서도 이 가집행선고를 붙일필요가 없다고 해서 2심에서도 가집행선고를 국가를 상대로한 경우에는 붙이지 아니하도록 개정한 것이 이 법률안의 개정 골자을시다.

여러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이 가집행선고는 어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해서 재판을 했을 때에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판이 확정될때까지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혹은 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여서 그 채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을시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산권을 청구할 때에 과연 국가로부터서 최종확정 판결을 얻은 후에도 그 채권을 추심할 수가 없을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새삼 말씀 하지 않아도 여러의원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2심에서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보 호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것도 그럴사한 얘기 을시다라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집행선고에 의해서 돈을 국가로부터 강제로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심 3심에서 그 재판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꾸로 원고가 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가 집행선고에서 받아간 돈을 환수해야 될

것인데 그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1 억원이상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수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특정인에게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집행 선고를 붙임으로써 국고가 손해를 본다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은 국가자체가 손해를 본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을 불법한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국민이 세금을 낸 그 돈을 빼앗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비교할 때에는 이 법률안은 마땅히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0년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 7차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 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이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1.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공화당의 **金鳳煥**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金鳳煥**의원 일간지의 사실에도 혹은 또 오늘 **金守漢**의원 혹은 **李重載**의원께서 보류동의가 나와서 오해없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서 심사보고를 한 **高在秘**의원이나 본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왜 구태여 이와같은 법률안을 내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본래 가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하듯이 채권의 보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뒤에 피고가 어떤 재산을 도피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가 그레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 옵니다.

그리나 국가는 재력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실에서는 집행 안하고 2실에서는 또 가집행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도 우습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6개월 내지 1년만이면 다 끝납니다. 그레도 하나도 도피할 수 없이 어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약 한달반쯤 전입니다. 우리 징발보상법에는 국가 재정을 생각해가지고 6대국회때 71년도까지 징발보상금을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갈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레가지고 가집행 선언을 1억5,000만원 붙였습니다.

가집행문예다가 10장 20장 전부 다 채무명의를 만들어가지고 大邱고 釜山이고 서울이고 전부 집달리한테다 주었습니다.

그레가지고 정거장이나 우체국이나 모든 창구에서는 그 돈을 갈무리 하느라고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가령 위헌으로 판결될는지 혹은 또 이것이 합헌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랬을 적에 그 징발보상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 합헌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래가지고서 했을 적에 1억5,000만원 나간돈은 어디서 받느냐 이것입니다. 요새 돈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5,000만원의 그 가집행을 붙였을적에 그럼 변호사가 1억5,000만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법조계나 재야법조인들도 재조에 있는 법조인들도 그 판결하는 그 재판장을 의심합니다.

저거 뭐가 내막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징발보상법도 71년도까지 전부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증권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판정에서 시간 따져 한다면 71년도까지 징발보상법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갚아주어라 하는 것이 그것도 위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10년간 국가 재정에 의해가지고 전부 징발보상금 그 증권으로 준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가지고 시방 89억원의 그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일시에 전부 다 나갈것 같으면 약300억쯤 됩니다마는 금년대로 다른 사람 판 것을 갖다가 전부 인용해가지고 전부 다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같은 것을 위험하고 판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을 이것을 약 1억5,000만원이나 2십에서 불여가지고 그것이 집행되고 또 관계 관청에서 우체국이나 철도청이나 어느 역이나 다 이렇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디까지든지 대법원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정 집행할 때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하나도 도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2십에서 하지 말고 3십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다. 어디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지에서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역시 표결로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재석 104명중 가 91 부 12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5. 세관관서설치법중개정법률안

(21시 15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36항 세관관서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尹在明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내무위원장대리 尹在明 정부로부터 제안된 세관관서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관을 관세청장 소속하에 두고 세관의 지휘 감독권을 관세청장이 갖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7월 10일 제 5차 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세관관서설치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6.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개정법률안

(21시 1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37항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또 간사이신 尹在明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장대리 尹在明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在淳의원외 10인이 제안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 사업과 둘째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과견 세째로 기능장학기금을 위한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과견을 위한 금품은 기부금품으로 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밖에 전국규모의 기능경기 사업과 기능장학

기금을 위한 금품모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부금 모집 금지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배부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야 전원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여러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개정법률안 (金在淳의원외 10인)
- 2.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내무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7.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21시 21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38항 문화재 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李聖秀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습니다.

○문교공보위원장대리 李聖秀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9년12월23일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법의 개정안은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중 미비점을 보완 신설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형문화재의 인정서와 지정서의 교부 반환등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에 전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해외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배하였을 때는 몰수할 수있게 하였으며 셋째로 지방문화재의 장을 신설했고 문화재 취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지방문화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네

째로 골동품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제하였고 다섯째로 문화재를 취급하는 기술자의 양성 및 이에 대한 국고보조로 문화재 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로 국내에 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재중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은 국가에서 매입할 수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의원께서는 심의하셔서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1.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정부)
- 2.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문교공보위원장) (부록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8. 영화법중개정법률안 (21시 24분)

○의장 李孝祥 그다음 제39항 영화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한번 더 간사 李聖秀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문교공보위원장대리 李聖秀 영화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화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영화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게 하고자 1970년 6월 2일자 陸寅修의원과 鄭相九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동법개정안은 1970년 6월 3일자 제5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위원회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하에 예의 심사한 결과 본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제제의 일부를 고쳐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법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제작업자와 영화수출입업자의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조합을 설치 운영케 하였으며 둘째로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

에 있어서 전속된 자에게 영화제작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째로 영화진흥조합은 영화제작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째로 이 법의 시행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다섯째로 이 법 시행당시의 외국영화의 수입추진을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이 처리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한국 영화의 다년간에 걸친 혼란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그 진로를 찾게 하는 것이 본법을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본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1. 영화법중개정법률안
(陸寅修 鄭相九의원외 14인)
2. 영화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문교공보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신민당의 金相賢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金相賢의원 영화... 지금 현재 법안 19조를 보면은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의 목적을 둔 소위 진흥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산 영화 방화에 있어가지고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 했고 또 실지로 우리 정부가 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그 육성을 위해서 또 선도해 왔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29조를 보면은 조합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과연 간판만을 붙이는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의 목적이 제작자나 영화 수출입업자 또는 영화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의 서로의 권익 옹호와 서로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조합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조합을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의 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만 과연 국산영화 제작자들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에게 실지로 이익이 되는 그와 같은 근본이 되는 기금은 전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않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어떤 간판이나 내세워가지고 조합이나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이와같은 것은 저는 법률로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만들려면은 정부가 영화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적어도 보조를 하겠다는 예산상의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영화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금을 만드는데에 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와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마련이 되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과거 1967년도나 68년도에도 국회에서 우리가 얘기가 된 것이 영화인을 위한 영화인 금고문제 이런것이 많아 얘기되었지마는 지금까지 그 영화인 금고 문제라는것이 정부측에서는 재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낼 수가 없다.

영화를 실지로 제작하는 영화인들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기금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 영화인의 금고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상론으로 그치고 오늘날까지 온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정부가 이 조합이 법률로서 이렇게 설치될 때에는 이 조합에 기금을 정부가 얼마를 보조하여주겠다 하는 이런 보장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하나의 무의미한 일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화인들의 참 권익과 그 사람들의 모든 편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뒷보담도 정부측의 증언을 받고 막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이와같은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액수가 어느정도 액수로서 영화인조합에 정부가 보조를 한다.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 이와같은 확고한 정부의 증언을 듣고 나는 이법이 통과되어야지 그렇지 않아가지고 하나의 법률로서 이와같이 조합을 만들고 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게끔 이익을 도모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여기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 李孝祥 지금 金相賢의원 정부의 답변을 듣고서 하실 모양인데 제안자 鄭相九의원에게……

○金相賢의원 제안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기금을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하려면 나는 이 19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런……

○의장 李孝祥 알았습니다. 鄭相九의원 그만두시고 문공부차관에게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차관 李春成 지금 金相賢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신흥영화진흥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흥조합의 구성은 영화를 수입 혹은 영화를 제작해서부터 일반 수요자 일반 대중이 영화를 관람하도록까지 몇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각각 관여하는 각종 단체로 하여금 전부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영화제작자협회 그 다음에 영화수출입협회 그 다음에 영화제작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영화인협회 그다음에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극장협회 해서 이런 각 단체가 영화가 들어와서 혹은 영화를 제작해서부터 일반국민이 보도록까지 관여하는 각종단체를 대표하는 전협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를, 외국영화를 수입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영화의 수출입협회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산영화를 1년에 약 15편에서 200편의 국산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표를 볼 것 같으면 국산영화 제작수의 약 3분의 1이 영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 60편의 영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의 소위 영화 수입하는 영화수입권을 시중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 시가가 현재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각종 관여하는 단체가 이 조합에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 60편의 영화의 1년에 수입하는 60편의 영화를 시가로 합할 것 같으면 약 3억원의 기금이 생기겠습니다.

아까 金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하등 정부의 국고로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그러한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60편의 영화의 수입권을 영화수출입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영화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입 협회가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기금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그 3억원으로서 충분히 국산영화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이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李孝祥 그만 양보하시지요. 鄭相九의원!

(의석에서 鄭相九의원—「예!」)

그러면 지금 영화법개정법률안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9.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11시 37분)

○의장 李孝祥 다음 제40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金益俊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위원장대리 金益俊 병역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제하기 위하여 출국하고 자할때 그 기간을 정하여 오직 친권자 또

는 그 신원을 보증할만한 자중 제93조 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자 2인 이상이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구태여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자라고 규정할 필요 없어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 국외여행자의 허가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는 허가 하지 아니하면 되는고로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세째 방위소집중 복무 이탈자의 처벌규정은 방위소집이 의무규정이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처벌규정만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였고 기타는 병무청의 신설에 따라 조문의 체계화를 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하게 된것이 올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정 부)

2.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진은 국방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0.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21시 3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41항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金斗鉉**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斗鉉**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申東旭**의원의 33인으로 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1970년 7월 14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해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

비심사보고 그리고 정부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조정해서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서 군사원호대상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물군경유족회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데 대해서 동 단체들은 세법상 비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와 영업세가 과세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만을 면제하도록 수정하고 군사원호대상자가 정착대부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현행 인지세법을 감안해서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申東旭의원의 33인)

2.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경제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신민당의 **金元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元萬**의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입니다.

군경유족회와 전물군경미망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경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를 한다고 하는데 반할 사람 하나도 없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없는것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법을 만전하게 제정하기도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법을 제정을 했을 적에 악용을 한 다든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선의로서 군경유가족을 원호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업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할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지금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내고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에서 많이 몰두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 탈세행위를 하고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어떠한 사람이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공장을 하나 운영 하는데 군경전물 미망인이나 그 유가족들만 가지고 회사에 등기를 해서 이것은 군경유가족들이 경영 하는 회사다 할 경우에 무엇으로 방지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 탈세라든지 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무부당국은 고려한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안되었습디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르지기 많은 그런 회사가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회사를 하고있다고 하면은 그 군경유가족들만 전부 갖다가 회사를 조직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면 모든 세금 다 안 내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도 안할리가 있겠어요. 또 사장으로 되어서 있고 중역으로 되어서 있는데 너희는 진짜로 남이다 하고서 얘기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할수도 없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렇다 할 경우에 방지할 방법이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법은 군경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더 가져올게 무엇이 있으며 또 군경유가족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초래 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 염려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李孝祥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겠습니다.

○재무부장관 南應祐 金元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가족회등은 물론 비 영리단체로서 또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 기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겠습니

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 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제셨습디만 金의원님의 심사보고에도 이미 말씀이 제셨습디만 이것은 비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세등을 과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金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 군사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만이 비 영리단체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李孝祥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 시키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1. 한국과학원법안

(21시 48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42항 한국과학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金裕璋의원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裕璋 한국과학원법안을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증가될 고위 과학기술자의 수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의 영재의 집중적 양성을 목적으로 한 특수이공계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키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둘째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째로는 한국과학원의 설립 건설 운영 및 기금확보는 정부 추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고 네째 과학원장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섯째로 과학원의 박사 젊은 석사 및 석사과정을 주도로 되어있습니다.

오늘날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불매 우수한 과학기술 영재의 창조적인 역할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되어있고 특히 자본 및 자원부족형인 개발도상국가의 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효과면에서 신택된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1. 한국과학원법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건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2. 금에관한입시조치법폐지법률안

(21시 50분)

○의장 李孝祥 의사일정 제43항 금에관한입시조치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金斗鉉의원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金斗鉉 금에관한입시조치법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금에관한입시조치법은 금의 생산 제련 매매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하여 195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 이외에도 금의 생산 및 제련에 대해서는 광업법에서는 금의 집중 및 수출입에 대하여는 외환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서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입시조치법상 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미량의 금을 불가피하게 함유하고 있는 일부 광산물이나 금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난점이 있을뿐 아

니라 대법원 관례에 따라 금의 밀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입시조치법만이 적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밀수법에 대한 증벌 내지는 밀수법 적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금 밀수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여러가지 면에서 불필요하게 된 입시조치법을 차제에 폐지하고 금 은에 대한 지불준비 내지 화폐와의 관련성 등이 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그 수출입이나 집중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에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폐지법률안을 1970년 7월15일 당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금에관한입시조치법폐지법률안

(정 부)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3. 고속국도법안

(21시 56분)

○의장 李孝祥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고속국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柳光鉉의원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건설위원장대리 柳光鉉 의사일정 제44항 고속국도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70년 6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74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모범인 도로법을 적용토록 규정 되어있으므로 법률안 제10조에 규정한 보안원에 대한 임무 및 직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4조 제5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본 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며 벌칙에 관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 고속국도법안 (정 부)
- 2. 고속국도법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 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3. 도로법중개정법률안

(22시)

○의장 李孝祥 마지막으로 제45항 도로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번 간사이신 柳光鉉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위원장대리 柳光鉉 의사일정 제 45항 도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6월 3일 정부로 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74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법에 의한 시설물의 긴급을 요하는 유지 보수는 전기통신법 제50조에 의한 통고도 없이 시행할 수 있게한 것을 현행 법대로 두도록 수정 하였으며 둘째 국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道)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가 부담토 록 수정 하였고 셋째 도로보안원 임명과 직무만을 개정 원안대로 두고 권한 및 벌칙 에 대하여서는 삭제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정부제안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만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 1.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정 부)
- 2. 도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위원장) (부록에 기재)

○의장 李孝祥 본 개정법률안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야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오전 열시에 시민회 관에서 기념식이 있습니다. 다수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분 산회)

○출석의원수 130인

○출석국무위원

- 경제기획원장관 金鶴烈
- 외무부장관 崔圭夏
- 내무부장관 朴環遠
- 재무부장관 南應祐
- 법무부장관 李 濤
- 농림부장관 趙始衡
- 건설부장관 李翰林
- 보건사회부장관 金泰東
- 교통부장관 白善燁
- 총무처장관 徐登敎
- 과학기술처장관 金基衡

○출석정부위원

- 국방부차관 柳根昌
- 문화공보부차관 李春成

【보고사항】

○의 안

△의안제출

1.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7월15일 金斗鉉의원의 10인 발의)

발의자 金斗鉉
 찬성자 金相賢 吳學鎭 金裕璋
 金聲喆 鄭稷來 金大鎭
 李賢宰 尹在明 李炳主
 申東旭

국방위원회에 회부

2. 농촌진흥법중 개정법률안

(7월15일 全休相의원의 21인 발의)

발의자 全休相
 찬성자 文太俊 李元榮 鄭幹鎔
 朴斗先 李源万 金三祥
 李浩範 李承春 徐相澹
 吳學鎭 金永福 吳俊碩
 吉典植 李元燁 金在淳
 金斗鉉 崔翊圭 柳光鉉
 陸寅修 李炳玉 李賢宰

농림위원회에 회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 폐지법률안

(7월15일 朴己出의원의 23인 발의)

발의자 朴己出
 찬성자 徐範錫 宋元英 李基澤
 鄭成太 金顯基 金殷夏
 鄭相九 金相賢 鄭一亨
 金正烈 朴炳培 禹弘矩
 尹濟述 金炯一 朴永祿
 金泳三 朴順天 金在光
 鄭雲甲 李重載 金元萬
 鄭海永 趙尹衡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4. 국회의원겸직유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7월16일 金在光의원의 27인 발의)

발의자 金在光
 찬성자 金正烈 金泳三 鄭成太
 朴永祿 禹弘矩 朴己出
 鄭一亨 金元萬 鄭雲甲
 李重載 金顯基 金殷夏
 金弘壹 鄭相九 金相賢
 朴漢相 曹逸煥 金炯一
 梁會瓏 金守漢 尹濟述

金大中 李敏雨 高興門
 徐範錫 李基澤 朴順天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5.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7월16일 법제사법위원장 盧載弼의원 제출)

6. 주한미군감축반대에 관한 결의안

(7월15일 의무위원장 車智澈의원 제출)

7. 1970년 산하곡매입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1970년 하곡양비교환율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7월16일 朴永祿의원의 13인 발의)

발의자 朴永祿
 찬성자 金守漢 金大中 李基澤
 金殷夏 鄭相九 金相賢
 鄭一亨 朴漢相 趙尹衡
 朴炳培 金顯基 禹弘矩
 金炯一

8.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7월15일 金振晚·鄭海永의원 의 11인 발의)

발의자 金振晚 鄭海永
 찬성자 高興門 金守漢 金在淳
 徐相澹 李浩範 尹在明
 李丁錫 鄭鎮東 朴己出
 李載瀼 金炯一

국방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1.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틀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비준에 관한 동의안

(7월15일 의무위원장 車智澈의원 보고) 원안통과

2.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1969년 9월 30일 정부 제출)

(7월15일 내무위원장 李相武의원 보고) 수정통과

3.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4월6일 정부 제출)
 (7월15일 내무위원장 李相武의원 보고) 원안통과

4.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5월16일 정부 제출)

(7월15일 내무위원장 李相武의원 보고)

- 수정 통과
- 5. 기부금품모집금지법중 개정법률안
(6월4일 정부 제출)
(7월16일 내무위원장 李相武의원 보고)
수정 통과
- 6. 세관관서설치법중 개정법률안
(5월16일 정부 제출)
(7월16일 내무위원장 李相武의원 보고)
원안통과
- 7.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5월18일 申東旭의원외 33인 발의)
(7월16일 재정경제위원장 金在淳의원 보고)
수정 통과
- 8.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1969년 12월 20일 정부 제출)
- 9. 한국과학원법안
(5월4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16일 재정경제위원장 金在淳 의원 보고)
이상 2건 원안 통과
- 10.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5월30일 정부 제출)
(7월16일 국방위원장 閔丙權의원 보고)
수정 통과
- 11. 양곡관리기금 법안
(4월9일 정부 제출)
(7월16일 농림위원장 李鍾根의원 보고)
수정 통과
- 12. 임산물단속에 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5월22일 정부 제출)
(7월16일 농림위원장 李鍾根의원 보고)
원안통과
- 13. 대한건설공사법중 개정법률안
(5월15일 정부 제출)
(7월16일 건설위원장 崔斗高의원 보고)
수정 통과
- 14. 관습성의약품관리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7월 5일 정부 제출)
(7월15일 보건사회위원장 韓相駿의원 보고)

- 수정 통과
- 15. 검역법중 개정법률안
(5월4일 정부 제출)
(7월16일 보건사회위원장 韓相駿의원 보고)
원안통과
- 16. 재정차관(농업차관의 1개사업)협정 체결에대한 동의안
- 17. 재정차관(철도사업)협정체결에대한추가 동의안
(이상2건 4월8일 정부 제출)
- 18. 1970년도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 차입금 상환에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4월2일 정부제출)
- 19. 의화국채발행한도에 관한 동의안
(5월28일 정부 제출)
- 20. 징발보상증권발행에 관한 동의안
(3월5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7월16일 재정경제위원장 金在淳의원 보고)
이상 5건 원안통과
- 21.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7월15일 金振晚·鄭海永의원외 11인 발의)
(7월15일 국방위원장 閔丙權의원 보고)
원안통과
- 22.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
(1969년 12월22일 정부 제출)
- 23. 영화법중 개정법률안
(6월1일 陸寅修·鄭相九 의원외 14인 발의)
(이상 2건 7월16일 문교공보위원장 金鍾浩의원 보고)
이상 2건 수정통과
- 24. 고속국도법안
- 25.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6월2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건설위원장 崔斗高의원 보고)
이상 2건 수정통과